

NEWS LETTER

2025-10-31

Legal Issue

- 창작과 알고리즘의 접점: AI 저작권 문제의 현주소
- 국내 패키지SW의 유럽연합 시장 진출 시 유의사항 1편

MINWHO News

- 김경환 대표변호사, 리걸타임즈 선정 TMT 부문 2025 리딩 로이어 선정
- 양진영 변호사,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주최 '감정교류 AI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회'에 연사로 참석
- 법무법인 민후·김경환 변호사, 'ALB Korea Law Awards 2025' 5개 부문 파이널리스트 올라

Business CASE

 **법무법인민후**



Legal Issue

창작과 알고리즘의 접점: AI 저작권 문제의 현주소

김경환 대표변호사

최근 인공지능(AI)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를 다루는 1심 판결(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Bartz v. Anthropic PBC, Kadrey v. Meta Platforms)이 나오면서 그 기준이 정립되어 가고 있는데, 미국 저작권청은 이 문제에 관한 보고서(초안)를 발표한 바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5년 5월 발표한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Part 3:Generative AI Training' 보고서를 통해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 단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위 보고서는 먼저 대규모 데이터 수집·정제, 모델 학습, 파라미터 고정, 그리고 출력·배포로 이어지는 기술적 흐름을 설명하면서,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메모리제이션'--즉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의 표현을 거의 그대로 재현하는 현상--이 저작권 침해 위험을 높인다고 보았다. 이러한 위험은 데이터 크롤링 단계에서 이미 대규모 복제가 이루어지고, 토큰화·캐시 과정에서도 수많은 임시 사본이 생성되며, 학습된 파라미터 공간이 원저작물의 표현을 압축된 형태로 '각인'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법적 분석 부분에서 저작권청은 데이터 수집·정제, 학습용 복제, 파라미터 저장, 출력 결과물의 재배포 등 모든 단계가 미국 저작권법이 규정한 복제권과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원칙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책임 여부는 공정이용(fair use)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보았는데, 비표현적이고 변형성이 높은 이용은 허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불법적 수단으로 구축된 대규모 상업 모델이 창작물 시장과 직접 경쟁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명시했다. 공정이용 4요소 중 특히 '시장 대체효과' 요소에서, AI가 창작물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결과물을 대량 생산하면 시장 침해가 현실화된다고 판단했다.

위 보고서는 라이선스·보상 체계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했는데, 첫째, 개별·집단 자발적 라이선스 모델은 이미 일부 분야에서 실현 가능성이 입증되었으나, 모든 저작물 범주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비용 및 표준화 문제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둘째, 강제 라이선스 제도는 효율 고정과 산업 관행 고착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현시점에서는 권장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셋째, 확장집단라이선스(ECL)는 특정 장르에서 시장 실패가 입증될 때에만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며, 이 경우 반독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넷째, 옵트아웃(opt-out) 제도는 미국 저작권법이 기본적으로 '옵트인(opt-in)' 체계를 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창작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청은 현행 저작권법과 공정이용 원칙만으로도 상당 부분 대응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입법 보다는 먼저 시장 주도의 자발적·집단 라이선스 모델이 성숙하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특정 유형의 저작물에서 구조적 시장 실패가 확인될 경우에 한해 ECL 등 '표적형 개입'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위 보고서는 관련한 소송이 2026~2027년경 항소심 판결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사법적 해석이 확립될 때까지는 유연성과 실험을 허용하는 '후행적·증거 기반' 정책 접근을 제안했는데, 저작권청의 위 보고서는 향후 미국 법원의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2-3425
oalmephaga@minwho.kr

Legal Issue

국내 패키지SW의 유럽연합 시장 진출 시 유의사항 1편

이현승 변호사

1. 논의의 배경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와 유관기관들은 국내 SW수출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전세계 각국, 특히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에서는 SW 분야의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 각국의 SW 분야 규제 중 대부분은 국가적 중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일반 국민의 생활이 스마트폰과 각종 앱과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등에 많이 의존하게 되면서 각국 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의 대상이 SW가 포함된 디지털제품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작년 말 유럽연합은 SW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를 새롭게 통과시켰다. 기존 제조물책임지침(이하 '기존지침')의 제조물에 SW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SW의 결함으로 인한 데이터의 손상도 배상의 대상으로 규정한 개정안이다. 이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이하 '개정지침')은 SW로 인해 일반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한 SW제조자의 배상책임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 18일 관보게재 후 20일 경과한 12월 8일에 발효되었다. 따라서 유럽연합 각 회원국은 2년 후인 2026년 12월 9일까지 국내 입법절차를 마무리해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유럽연합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국내 패키지 SW업체는 1년 반 후인 2026년 12월경부터 시행될 개정지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개정지침의 제조물과 제조자 개념, 결함과 손해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패키지SW 분야의 대비방향을 정리해 본다.

2. 개정지침의 제조물과 제조자 : SW 및 인공지능(AI) 포함

유럽연합의 기존 제조물책임지침(Directive 85/374/EEC)은 1985년 제정되고 1999년 농산물을 제조물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데 그쳐,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무형의 SW를 제조물이라고 포섭하기가 어려웠다.

1988년 유럽연합은 SW도 기존지침의 적용대상이라고 유권해석했지만, 여전히 SW가 기존지침의 적용대상인지 불확실했다. 이는 2002년 제정 당시 제조물을 '동산'으로 규정한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에서 SW 등 동산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새로운 형태의 산출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구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지침 전문(recital)에서는 새로 포함된 SW의 예시로 운영체제, 펌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AI 시스템을 들고 있으며, 특정한 공급 또는 사용방식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치에 저장되거나 통신망 또는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공급되는 형태, SaaS 방식 등에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참고로 새로 포함된 대상에는 디지털제조파일(digital manufacturing file)도 있다. 디지털제조파일은 '기계나 도구를 자동으로 제어해서 유형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능적 정보를 포함한 동산에 대한 디지털 버전 또는 디지털 템플릿'으로 정의되는데, 쉬운 예로 3D프린터로 어떠한 물건을 제작하기 위한 디지털 파일을 의미한다.

한편,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자유롭게 접근, 사용, 수정, 재배포할 수 있는 오픈소스SW(FOSS)는 개정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업적 목적이 있는 경우는 적용대상이 된다. 상업적 목적을 겸하는 경우라면, 최근 종종 보이는 이중(dual) 라이선스 방식의 오픈소스SW가 해당될 것이다. 즉,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의무-수정한 소스코드의 공개의무 등-를 피하기 위해 상용 라이선스를 같이 제공하는 오픈소스SW는 상업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오픈소스SW를 구성요소로 이용한 상용SW의 제조자는 해당 오픈소스SW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오픈소스SW의 제조자를 대신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상업적 목적이 없는 오픈소스SW의 제조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해당 오픈소스SW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은 상용SW의 제조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상업적 목적의 예시로 개인데이터 제공의 댓가로 무료로 제공되는 SW의 경우를 드는 한편, SW 자체의 보안성(security), 호환성(compatibility),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높이려는 목적은 다시금 제외하고 있어서 지침 개정과정에서 SW업계의 관행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보안성, 호환성 등을 높이기 위해 오류/오작동 보고 기능을 탑재한 SW가 많은데, 해당 SW가 제조사 서버로 오류 보고 시 신속한 오류 수정을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해당 시스템 정보 등을 같이 전송해야 하므로 이때 개인데이터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영리적 목적으로 개인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무료 SW와 구분하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조물결함에 대한 책임주체를 제품/부품의 제조자(manufacturer), 관련 서비스 제공자, 대리인, 수입업자/유통업자 또는 주문처리서비스(풀필먼트서비스) 제공자까지로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이를 경제적 운영자(economic operator)로 통칭하고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법상의 AI시스템제공자도 제조자임을 전문에 명시하고 있다. 책임주체의 범위 확대는 제조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책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 책임주체를 늘리는 것이며, 다양한 책임주체들은 자신의 면책을 위해 제조업체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므로 제조업체도 관련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유럽연합 역외의 패키지SW업체가 개정지침의 제조자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즉, 패키지SW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유럽연합 소재의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 등이 배상한 후 그 계약에 근거해 구상하는 경우가 아니라 유럽연합 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국내 패키지SW업체들이 개정지침의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개정지침에는 제12조의 연대책임, 제15조의 책임제한 계약조항의 무효 등의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개정지침 제8조 제1항(c)에서는 유럽연합 역외에서 만들어진 제조물이나 부품의 제조자인 경우에는 그 제조자의 책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입업체, 권한있는 대리인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반대해석 상 개정지침에서는 유럽연합 역외의 제조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제조물책임지침이 자연인과 제조자 간의 책임과 배상을 다루는 사법(private law)임을 감안하면 별도의 역외적용 규정없이도 유럽연합 역외의 제조자에게 적용된다는 견해도 있다(이해원(2025) 참고).

참고로 유럽연합은 디지털통상 분야에서는 미국 등이 주장하는 SW와 디지털콘텐츠 등 유무형의 '디지털제품(digital product)' 개념을 수용하는데 소극적인데, 제조물책임지침 같은 역내 규정에서는 SW를 '제조물'(product)에 포섭하고 있어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3. 결함과 손해에 대한 검토 : 직업적 용도 전용인 재산의 손해는 제외

제조물책임지침은 제조물의 결함(defectiveness)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결함의 정의와 범위가 중요하다. 그러나 개정지침은 기존지침과 유사하게 결함에 대한 정의(definition)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개정지침 제7조(결함) 제1항은 제조물이 개인이 기대할 수 있는 안전 또는 EU 법령이나 회원국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면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7조제2항에는 결함 평가의 다양한 고려요소들을 나열하고 있다.(<표 1> 참조).

참고로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을 제조/설계/표시 상의 결함 또는 '통상적으로 기대가능한 안전성의 결여'로 정의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점은 개정지침과 동일하다.

<표1> 개정지침 상 제조물 결함평가 시 고려요소

순번	규정	비고
1	제조물의 라벨, 디자인, 기술적 특성, 구성, 포장과 제조물의 조립/설치/사용/유지관리를 위한 설명을 포함한 제조물의 모양과 특성	
2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제조물의 용도	제조자가 의도하지 않은 용도도 포함
3	제조물이 시장 출시 또는 서비스 개시 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특성을 학습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제품에 미치는 효과	SW의 업그레이드/업데이트와 연관됨. 또한 인공지능(특히 LLM) 제조물에 관련된 평가요소
4	상호 연결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제조물과 같이 사용될 것으로 기대가능한 다른 제조물이 해당 제조물에 미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효과	연계 사용되는 다른 SW가 해당 SW에 미치는 효과가 중요
5	제조물이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서비스 개시한 시점 또는 제조자가 제품의 통제권을 상실한 시점	SW의 유지관리 종료시점(EOS)이 중요함
6	안전과 관련되는 사이버보안 요건을 포함하여 관련되는 제조물의 안전 요건	해당 SW에 법령상 요구되는 사이버보안 요건이 중요
7	제8조의 관할당국 또는 경제적 운영자에 의한 제조물 리콜이나 제품 안전성과 관련된 그 밖의 조치	당국이나 제조사의 리콜이나 안전 관련 별도 조치가 있는 경우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 높음
8	제조물이 목표로 삼은 사용자 그룹의 특정한 요구사항	제조물 이용자 그룹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
9	제조물의 목적이 손해예방인 경우, 제품이 그 목적달성에 실패한 경우	해킹 등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보호SW와 관련되는 사항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제조물의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를 포함해 이미 시장에 더 많은 제조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제조물이 결함이 있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개정지침 제7조제3항).

그리고 개정지침 제6조(손해)는 기존지침 제9조(손해)를 개정하면서 손해배상의 대상규정을 변경하였다. 우선, 결함있는 제품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새로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었다. 기존 지침의 '개인적 용도 또는 소비'(private purpose or consumption) 표현은 '직업적 용도 (professional purpose)'을 기준으로 변경되었고 데이터에 관한 규정도 새로이 추가되었다. 개정지침 전문에서 자연인에게만 배상한다는 목적에 충실해야 하고 소송의 남발을 방지해야 한 다면서 직업적 용도 전용 재산에 대한 피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 것이 조문에 반영된 것이다. 개정지침에 따른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직업적 용도 전용 재산에는 데이터도 포함되 고, 특히 다른 용도를 겸하고 있다 해도 이 지침의 배상대상에서는 제외된다(전문 22조, 25조).

따라서 제3자책임지침에 영향을 받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B2C SW 또는 클라우드서비스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진 등을 저장하는 저장소, 즉 서비스형 인프라 클라우드서비스의 결함으로 사용자 소유의 사진등 데이터가 소실되었다면 본 지침에 따라서 배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무 목적의 B2B SW 또는 SaaS를 사용하면서 생성된 데이터는 직업적 용도 전용 재산이기 때문에 본 지침의 배상대상은 아니다. 손해를 본 기업은 SW 또는 SaaS 이용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조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아래에서 논하는 결함의 추정 등 개정지침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표2> 개정지침과 기존지침의 손해배상 대상의 비교

순번	개정지침 제6조(손해배상)	기존지침 제9조(손해의 정의)
1	의학적으로 인정된 정신적 건상의 손상을 포함한 사망 또는 신체적 상해	사망 또는 신체상해로 발생한 손해
2	결함있는 제품 자체는 제외	결함있는 제품 자체는 제외
3	제품의 제조자가 통합하거나 상호연계했던 결함있는 구성요소에 의해 손상된 제품은 제외	
4	-	500 ECU 미만 재산의 손상은 제외
5	직업적 목적(professional use)으로만 사용되는 재산(제품)의 손상/손해는 제외 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의 손상/손해도 포함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용도 또는 소비를 위한 제품인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주로 개인적인 용도 또는 소비를 위해 쓰던 제품에 발생한 손상/손해는 배상
6	직업적 목적(professional use)으로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의 파괴/손상은 배상 -직업적 목적 외에 다른 용도가 있어도 무방	

4. 국내 패키지SW업체의 대비방향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따르면 개정지침은 유럽연합에 개인용 SW 또는 앱서비스로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모든 국내 패키지SW업체들이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유럽연합 현지 법인의 존재여부와 무관하다. 또한 준비기한은 2026년 12월경이다. 다만, 개정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내법 입법절차를 거친 후에야 각 회원국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시행될 수 있는데, 지침 내 명시된 기한까지 각 회원국 별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2026년 12월까지 준비를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할 SW 및 연관서비스(이하 'SW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오류나 오작동이 없도록, 그리고 그로 인한 개인적 용도 데이터의 손상이나 그 밖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SW등의 개발 및 업데이트 시 철저히 설계 및 수정부분을 점검하고 부분 및 통합 테스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SW등에 대한 소스코드와 설계문서의 일치 및 버전관리, SW등의 자재명세서(SBOM)에 대한 철저한 관리, 정기적인 서비스점검 등으로 결함 발견 시 신속히 대응하고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재산상 피해에서 데이터의 손상도 포함하고 있어 이용자의 개인데이터의 복원/복구를 위한 기능개발, 연관서비스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완전한 회복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면 정신적 손해가 인정될 여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상용SW가 오픈소스SW를 구성요소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개정지침을 고려할 경우, 패키지SW업체는 1. 이중 라이선스 오픈소스SW라면 상용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추후 결함 및 손해발생 시 배상책임에 대해 구상권 행사가능하도록 대비하든지, 2.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활용하되 내부인력을 활용해 해당 오픈소스SW의 잠재적 결함을 감소시켜 나갈 것인지 둘 중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현승 파트너 변호사

[프로필 보기](#)

02-532-3425
leehs@minwho.kr

MINWHO NEWS

김경환 대표변호사, 리걸타임즈 선정 TMT 부문 2025 리딩 로이어 선정

김경환 대표변호사, 리걸타임즈 선정 TMT 부문 2025 리딩 로이어 선정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법조 전문지 리걸타임즈(LegalTimes)가 발표한 '2025 리딩 로이어(Leading Lawyers)'에서 TMT(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부문 리딩 로이어로 선정되었습니다.

'리딩 로이어'는 리걸타임즈가 매년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국내 변호사와 로펌을 선정해 발표하는 시리즈로, 올해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술·미디어·통신 분야에서의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IT·신기술, 통신, 플랫폼, 데이터, AI 등 다양한 기술 기반 산업의 법률 문제를 선도적으로 다뤄왔으며, 특히 기술분쟁, 개인정보보호, 크롤링 관련 소송 등 주요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TMT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영향력을 꾸준히 넓혀왔습니다.

이번 선정은 기술과 법의 접점에서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쌓아온 결과이자, 민후가 추구하는 '기술 중심 사회에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앞으로도 TMT를 비롯한 신산업 전반에서 깊이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고객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MINWHO NEWS

양진영 변호사,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주최 '감정교류 AI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회'에 연사로 참석

양진영 변호사,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주최 '감정교류 AI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회'에 연사로 참석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사단법인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가 주최한 '감정교류 AI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회'에 연사로 초청되어 국내외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류하거나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인공지능이 확산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이러한 AI 기술이 가져올 윤리적 쟁점과 책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AI 윤리의 기본 원칙 ▲감정교류형 AI의 실천 지침 ▲행동강령 및 확산 체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국내외 감정교류형 AI 관련 기준 및 정책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해외 주요 국가의 입법·정책적 움직임과 국내 AI 기술의 법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했으며, 감정형 AI가 인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사회적 규범 설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교감하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책임 있는 AI 개발과 윤리적 활용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I 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법적·윤리적 영향을 다각도로 연구하며,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전문 법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양진영 변호사를 비롯한 민후 소속 변호사들은 앞으로도 AI와 윤리, 법제도의 교차점에서 균형 잡힌 논의를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MINWHO NEWS

법무법인 민후·김경환 변호사, 'ALB Korea Law Awards 2025' 5개 부문 파이널리스트 올라

법무법인 민후·김경환 변호사, 'ALB Korea Law Awards 2025' 5개 부문 파이널리스트 올라

법무법인 민후와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국제 법률 전문 매체 아시안리걸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 주관의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총 5개 부문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며 또 한 번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글로벌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의 후원으로 매년 개최되는 국내 법조계의 대표적인 행사로, 국내외 주요 로펌과 변호사들이 한 해의 성과를 겨루는 자리입니다.

민후는 이번 ALB 어워즈에서 ▲올해의 대표 변호사(Managing Partner of the Year, 통합 부문) ▲올해의 대표 변호사(Managing Partner of the Year, Boutique Firm) ▲올해의 부티크 로펌(Boutique Law Firm of the Year) ▲올해의 지식재산권 로펌(IP Law Firm of the Year) ▲올해의 TMT 로펌(TMT Law Firm of the Year) 등 총 5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선정은 IT·신기술·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민후가 보여온 전문성과 꾸준한 성장세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민후가 기술과 법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개인 부문 최고 영예로 꼽히는 'Managing Partner of the Year' 통합 및 부티크 부문에서 동시에 후보에 올랐습니다. 김 변호사는 AI, 데이터, 플랫폼,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선제적 법률 전략과 혁신적 소송을 이끌며 업계 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민후는 ▲잡코리아·사람인 웹크롤링 사건, ▲야놀자 DB 분쟁, ▲핑크퐁 저작권 침해 소송, ▲메타 개인정보 과징금 취소 사건 등 굵직한 IT·IP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신기술과 법의 경계에서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로펌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술 중심 사회 속에서 더욱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할 것이며, 이번 ALB 파이널리스트 선정은 민후가 걸어온 길의 성과이자, 더 큰 책임감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Business CASE

이달의 주요 업무사례

1. 핑크퐁 상어가족(아기상어) 대리하여 음악 저작권침해 주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2. 저작권침해소송 제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 판결 도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3. 개인정보 무단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 승소
4. 초상권 사용으로 인한 초상등사용금지등신청 사건에서 의뢰인(피신청인)을 대리하여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
5. 화물운송사업 양도계약 분쟁에서 의뢰사를 대리해 조정을 통해 합리적 금액의 손해배상액 도출
6.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IP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자문 제공
7. 국내 사회적협동조합에 기부금 사용처 및 해외 자금 송금 관련 국내법 검토 자문 제공
8. 신원인증 서비스 운영 기업에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개정 법률자문 제공
9. 보험사 웹사이트 스크래핑 기반 서비스의 개인정보·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상 대응 자문 제공
10.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회원정보 제공 및 사전 고지의무 관한 법률자문 제공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 타워 역삼 11층

Tel. +82-2-532-3483 Fax. +82-2-532-3486

www.minwho.kr



[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주요 업무 사례 바로가기]



[전화 상담 바로가기]



[카톡 상담 바로가기]



[홈페이지 상담 바로가기]



[이메일 상담 바로가기]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민후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및 소식 자료로, 모든 법률적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민후에 있으므로, 무단 배포, 복사, 게재를 금합니다.